

세무학회지
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pp.83~103
한국세무학회

합병과세제도의 개정이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에 미치는 영향*

이병렬** · 홍정화*** · 차진화****

<요 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령 전·후로 구분하여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병완(2000, 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합병 전·후의 조세효과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큰지 살펴본 결과,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 직전년도에서 합병 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 당해년도와 합병 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전·후를 살펴본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주제어>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합병기업, 조세효과

* 이 논문은 제1저자 이병렬의 박사학위논문(2013. 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신승회계법인 부회장, bylee5714@hanmail.net, 010-6257-5714, 제1저자

***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jhhong@gachon.ac.kr, 031-750-5215,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겸임교수, jinhwa412@hanmail.net, 010-2286-8164, 공동저자

I. 서 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 및 분할 관련 세제를 개편해 왔으며, 2009년 12월 합병차익 등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여 양도차익의 개념으로 간소화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였다¹⁾. 그리고 종전 적격합병의 요건 중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로 그 비율이 높다는 비판을 받던 부분을 80%²⁾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김진수 · 이준규 2006 ; 정지선 외 2011).

기업합병의 목적은 개별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사회전체의 효익을 발생시키는 합병과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의 목적과 형태에 관계없이 합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동기의 합병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기업합병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합병은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사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루어진다(Simirlock et al. 1986). 일반적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려는 동기만으로 기업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기업합병은 합병당사자들에게 세금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부는 제공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왜곡된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세금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 외에도 합병비용이 합병이득을 초과하게 되어 기업합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세금효과의 존재로 인하여 합병비용보다 합병이득이 더 커질 경우에 기업합병이 일어날 수 있다. Auerbach(1983)는 합병의 비용을 일부 보상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합병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합병에 따른 효율성 제고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효과는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기업의 투자위험을 감소시켜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도 있다(Auerbach and Reishus 1986 ; 염규옥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령 전·후로 구분하여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1) 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의 구조조정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및 제38조에 규정된 포괄적 자산양도와 포괄적 주식교환까지 합병 등에 준하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미국은 50% 이상, 일본은 80% 이상이 기준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변수의 정의 및 표본선정에 관해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제Ⅴ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서술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기업합병

가. 기업합병의 개념

기업합병이란 법정절차에 따른 회사 간의 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동시에 사원도 그 회사의 사원으로 되게 하는 행위로 기업의 외적 성장과 생존에 기여하는 기업재편성 수단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합병이란 기업결합의 한 형태로서 기업이 외부적으로 확대발전하기 위하여 합병당사 회사가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잃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화 하는 행위이다. 또한 합병은 법률적 변동사항 및 경제적 변동사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합병의 의미는 법률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합병을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두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규정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동하는 법률행위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경제적 또는 실질적 단일 기업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기업단위로서 기업 활동을 하게 하는 절차이다.

나. 회계학상의 합병본질론

기업합병을 회계학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면 경영주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으로서 두개 또는 그 이상의 회계실체가 하나의 회계실체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병본질론이 대륙법계에 의한 상법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었다면, 합병회계론은 영미법계의 회계학자들에 의하여 합병을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매수와 지분통합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합병회계를 전개하여 왔다.

(1) 지분통합법(pooling of interest method)³⁾

지분통합법은 주식의 교환에 의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아 양 회사의 종래 소유지분의 귀속에 중점을 둔다. 합병당사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가액 대로 합병회사에 인계되며 이익잉여금도 합병회사에 승계되는 처리방식이다. 이 때 합병 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 전 양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이며, 자본금 또한 양 회사의 합병 전 자본금의 합계액과 같다. 다만, 잉여금은 합병차손이나 합병차익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은 원칙적으로 자본잉여금에서 먼저 가감하고 그래도 차액이 남으면 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하도록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자는 지분통합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수법보다 순이익을 크게 보고할 수 있고, 주당이익률을 높게 나타낼 수 있으며, 이익조작도 가능하게 되어 경영자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지표하는 지표 산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오명준 2007).

(2) 매수법(purchase method)

매수에 의한 합병은 지분소유관계를 처음부터 무시하여 승계하는 자산에만 중점을 두고 피합병회사의 각 자산을 개별적으로 공정시가로 평가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매수법에 의한 회계처리의 특징은 취득회사가 매수에 의해 승계한 재산은 공정가액으로 계상되며, 유보이익은 승계되지 않으며, 합병에 있어서 합병대가가 피합병회사 순자산의 공정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20년 내 매기 균등액을 상각하고 합병대가가 순자산의 공정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점 등이다.

따라서 매수법은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시가로 매수한다고 가정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기업결합의 경우 매수법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다. 기업합병의 분류

기업합병은 그 방법과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 되는데 방법상의 분류와 성격상의 분류의 합병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방법상의 분류

방법에 따라 합병을 분류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자산취득에 의한 합병으로 이는 실제의 피인수기업의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지만, 법률

3) 미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었던 지분통합법은 2001년 FAST Statement No.141이 공표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우리나라도 상장기업 전면도입 원년인 2011년부터 지분통합법을 폐지하였다.

상으로는 해당 기업의 자산의 일부 혹은 전부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흡수합병 및 신설합병에 의한 합병으로 이는 두 회사가 법률상 결합하는 형태로서 흡수 합병이란 사업의 양도 및 양수과정에서 두 회사 중 한 회사가 법률상 계속 존재하고 다른 회사는 청산 또는 해산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가리키며, 신설합병은 두 회사가 모두 청산 또는 해산되고 제3의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셋째, 주식취득에 의한 합병으로 이는 회사 혹은 사업을 인수하되 사업의 실체는 바뀌지 않고 다만 피인수회사의 주주로부터 인수회사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분확보에 의해 경영권을 지배하는 방법이다.

(2) 성격상의 분류

합병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보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합병으로 구분된다.

첫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 기업의 경영보다 기업의 매매차익에 염두를 두고 하는 합병으로 이러한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그린메일(green mail)⁴⁾과 burst-up takeover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둘째, 기업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으로 그 형태에 따라 다시 우호적인 합병(friendly M&A)과 적대적인 합병(hostile M&A), 수평적 합병·수직적 합병 및 다각적 합병, 역합병(reverse merger)과 정상합병(forward merger)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비교

우리나라는 1998년 말 세법 변경에서 기업의 합병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법인세법상 합병과세에 대한 특례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적격합병의 요건을 마련하고 해당 요건을 기초로 하여 다소 강화하거나 완화한 요건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 세제상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말 세법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다. 즉 합병세제는 종전의 적격합병 요건 가운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신주가 합병대가의 95% 이상이어야 한다는 비율은 기업경영판단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로 80%⁵⁾로 하향 조정하고, 합병차손에 대한 5년간 균등분할 익금(손금)산입하게 하는 등 합병과세 특례적용을 완화하였다.

4)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보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프리미엄을 챙기는 투자자들을 그린메일러(green mailer)라고 한다. 그린메일러들은 대부분 기업사냥꾼(raiders)들이다. 이들이 보유주식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대주주에게 편지를 보낼 때 초록색인 달러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린메일(green mail)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5) 미국의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일본은 8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표 1>에서는 이러한 합병과세의 특례적용에 대한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표 1> 합병과세 특례에 대한 변경 전·후 비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적격합병 요건			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 인간 합병 ②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95%이상 ③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①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 ②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법인의 주식 80%이상 ③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 이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④ 합병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피 합 병 법 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양도차손을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 어 법인세 신고(청산소득 규정 삭제)
	양도손익	일반	—	양도가액* ¹ - 순자산장부가액* ²
		적격 합병	—	순자산장부가액 - 순자산장부가액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	일반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합병대가(액면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적격 합병	합병대가(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순자산장부가액(시가가 적은 경우 시가) - 피합병법인 주식취득가액
합 병 법 인	합병 평가 차익	일반	익금산입	합병매수차익·차손* ³ 에 대하여 합병 등기일부터 5년 동안 균등분할 익금(손금)산입(월할계산)
		적격 합병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일시상각 충당 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과세이 연)외 기타자산의 차액은 익금산입	장부가 취득으로 과세 없음
	피합병 법인의 세무조정	일반	세무조정 항목별 승계여부 결정	승계불가
		적격 합병	세무조정 항목별 승계여부 결정	일괄승계
	피합병 법인의 결손금	일반	승계불가	승계불가
		적격 합병	승계가능	일괄승계

<표 1> 합병과세 특례에 대한 변경 전·후 비교 (계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합병 법인의 사후 관리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시 손금산입 한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공제받 은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시 또는 피합 병법인 주주의 교부받은 신주 처분 시 자산을 시가로 전환하여 그 차액 익금산입, 공제받은 이월결손금 익 금산입

- *1 양도가액=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법인의 주식 및 현금 등 + 합병법인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 + 합병법인이 소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비율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중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취득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중 비율을 계산함)
- *2 순자산장부가액=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 부채의 장부가액
- *3 합병매수차익. 차손은 양도가액이 순자산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말함.
- *4 정지선·최천규·권오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2011, pp.214-215

3. 선행연구의 검토

기업합병의 목적에는 경영전략적인 목적, 영업적 목적, 재무적 목적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합병의 방법과 형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경영전략적인 목적으로는 기업성장의 연속성 유지, 국제화를 위한 경영전략,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저평가된 기업의 활용 등이 있고, 영업적 목적으로는 시장진입시간의 단축, 신규시장 진입시의 마찰경감, 규모의 경제, 시장점유율 확대 등이 있고, 재무적 목적으로는 사업다각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 자금조달 능력의 확대, 조세효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업합병의 동기는 특정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기업합병의 목적과 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기업합병과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Auerbach and Reishus(1986)는 1968년부터 1983년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318개의 합병사례를 표본으로 세 가지 조세변수(이월결손금과 세액공제의 승계, 자산의 평가증 및 부채비율의 변화)를 이용하여 잠재적인 조세효과를 평가하고 조세효과의 존재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uerbach and Reishus(1988a)의 계속된 연구로서 조세이익이 기업합병의 형태를 결정하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Gilson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tax favoritism의 개념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미치는 세제상의 영향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조세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합병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조세효과는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비용(법적비용, 금융기관수수료 및 중개수수료)과 정보비용(정보비대칭,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을 초과할 때 존재하게 되며,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병동기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조세효과가 합병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로서 황순성(1993)의 연구에서는 Auerbach and Reishus(1988b)의 연구모형을 도입하여 가상합병의 비교를 통하여 조세효과가 기업합병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합병은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진 합병보다 계열기업간에 이루어진 기업합병이 많기 때문에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한 조세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기업합병이 발생하였다고는 어렵다고 하였다. 채병완(2000)은 1992년 이후에 합병이 이루어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병공시일과 합병등기일간의 합병비율의 차이, 부채비율의 증가에 따른 조세효과,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조세효과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자비용의 손비처리를 통한 조세효과가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합병기업이 합병후의 매출액은 증가하였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합병에 따른 조세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염규옥(2007)은 기업결합의 여러 동기중의 하나인 조세효과(tax effect)를 위하여 기업이 조세전략 측면에서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지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근시안적으로 탈세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합병 동기 중의 하나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경우에 기업경쟁력을 높이거나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 아닌 조세부담만을 경감받거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이월결손금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세법변경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III.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설정

기업은 존속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변화로 성장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업 변화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기업의 내적성장만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혁신을 순조롭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기업합병을 선택하게 된다.

기업은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조세부담은 기업의 이익 창출 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으로 조세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 특히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개발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영자들은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조세부담은 줄이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조세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가능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효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효과와 일환으로서도 기업합병을 선택하게 된다.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의 행위로 합병을 선택하게 되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탈세 등 부정적인 조세회피 방법으로 합병을 이용하기도 한다. 합병과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기업 재조직과 관련된 과세제도가 기업의 재조직 행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요소가 없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회피로 이용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합병과세제도의 개선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조세효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합병과세제도의 변경이 유리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서둘러 합병을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합병과세제도가 변경되기 전 서둘러 합병을 진행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기업의 조세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현걸(2005)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영구적 차이 세무조정 항목 중 접대비 한도초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등이 빈도수가 높은 항목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은 세무조정 항목의 조정없이 법인세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게 된다. 염규옥(2007)은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따른 조세효과가 합병의 유인으로서 존재하고,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존재할 경우 회계이익에 가산되는 세무조정인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항목이 증가되어 과세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법인세부담이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항목의 축소를 통한 공격적인 세무조정을 수행할 유인이 적을 것이다. 이월결손금 합병과 이월결손금 역합병 여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승계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최대 5년이므로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 조기에 공제하여 조세절감을 얻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합병초기에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승계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기업의 조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한다.

가설 2 :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클 것이다.

2.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KIS-VALUE에서 추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 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
- ②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합병결의, 합병신고서 및 합병중
료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 ③ 합병회사의 합병전 재무제표를 KIS-VALUE 데이터베이스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
템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업
- ④ 해당연도에 2회 이상 합병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
- ⑤ 삼각합병, 사업부문 분할 합병, 자산양수도과 분할을 제외한 순수한 합병만 포함
- ⑥ 금융업은 제외
- ⑦ 상장관리, 코스닥관리 대상 기업은 제외
- ⑧ 합병 2년전부터 합병 2년전까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율이 음(-)이 아닌 기업

위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본기업의 수는 총 83개 기업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가. 세무조정액(BTD)

Desai and Dharmapala(2006)는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효과를 측정하였다.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는 크게 회계이익을 높이려는 유인과 세무보고이익을 낮추려는 유인의 차이로 조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Manzon and Plesko(2002)는 법인세부담액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추정하였다. 박종국 외(2009)는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세무조정내역에 세전이익을 가감하여 과세소득을 측정할 경우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이 많은 경우 경영자는 회계이익을 증가시켜도 법인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생기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효과와 대용변수로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BTD)을 이용한다. 세무조정액(BTD)은 이병렬(2013)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BTD = YS - \overset{\wedge}{YT}$$

BTD : 세무조정액(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총자산)

YS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YT : 세무보고이익(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법인세 최고세율⁶⁾)

6)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10% 포함) : 2005년~2008년 27.5%, 2009~2012년 24.2%

나. 합병과세제도

기업합병의 다양한 동기 중 조세절감의 목적 또한 중요한 합병동기로 취급되고 있다. 1990년 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합병은 합병건수와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확대되었다. 이에 맞추어 상법에서도 합병관련 규정의 보완이 이루어져 1998년 합병과 분할에 대한 규정이 신설 및 보완되었고, 2001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어 지주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이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염규옥 2007). 정지선(2011)은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말 세법변경으로 종전과 다른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 지원세제로 다가가고 있어 합병과세에 대한 특례적용을 완화하는 등 구조조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병과세제도가 바뀌었다. 그러므로 2009년 말 법인세법 개정(2010년 7월부터 시행)으로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 조세효과는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한 조세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았다. 2010년 7월 이전 합병한 기업을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으로, 2010년 7월 이전 합병한 기업을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로 분석하였다.

다. 이월결손금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조세절감을 얻고자 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상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인해 합병법인이 역합병을 채택할 유인이 발생한다.

합병법인은 합병 후 승계된 이월결손금의 공제기한이 최대 5년이므로 이월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하여 조세절감을 얻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합병초기에 과세소득 증가를 통하여 승계되어 온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병당시 피합병기업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합병기업이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를 모두 이월결손금이 보유기업으로, 합병기업과 피합병기업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는 연구에 포함된 표본기업의 수를 제시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기업이 59개, 71.0%이었으며,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기업이 24개, 28.9%이었다.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은 39개, 47.0%이었으며,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은 44개, 53.0%이었다.

〈표 2〉 표본기업의 수

		빈도	%	누적%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59	71.1	71.1
	개정 후	24	28.9	100.0
이월결손금	보유기업	39	47.0	47.0
	미보유기업	44	53.0	100.0

〈표 3〉은 세무조정액(BTD)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평균 -0.173, 합병당해년도 평균 -0.351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 0.178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 0.161만큼 증가하였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평균 -0.198, 합병당해년도 평균 -0.208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 0.01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는 평균 0.136만큼 증가하였다.

〈표 3〉 세무조정액(BTD) 변수의 기술통계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중위수
표본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83	-0.173	0.464	-2.444	2.734	-0.143
	합병당해년	83	-0.351	1.174	-9.917	0.846	-0.134
	합병차기년	83	-0.190	0.655	-4.071	2.374	-0.120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59	-0.198	0.228	-0.882	0.320	-0.171
	합병당해년	59	-0.208	0.510	-3.336	0.846	-0.141
	합병차기년	59	-0.072	0.505	-2.489	2.374	-0.103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24	-0.112	0.794	-2.444	2.734	-0.069
	합병당해년	24	-0.702	2.020	-9.917	0.016	-0.119
	합병차기년	24	-0.480	0.874	-4.071	0.063	-0.193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39	-0.236	0.389	-2.444	0.240	-0.178
	합병당해년	39	-0.211	0.374	-2.110	0.603	-0.124
	합병차기년	39	-0.094	0.229	-0.761	0.467	-0.122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	합병1년전	44	-0.103	0.533	-0.882	2.734	-0.066
	합병당해년	44	-0.509	1.664	-9.917	0.846	-0.134
	합병차기년	44	-0.297	0.919	-4.071	2.374	-0.116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합병직전년도 평균 -0.112 , 합병당해년도 평균 -0.702 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 0.590 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에는 평균 0.222 만큼 증가하였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평균 -0.236 , 합병당해년도 평균 -0.211 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 0.025 만큼 증가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에는 평균이 0.116 만큼 증가하였다.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 평균이 -0.103 , 합병당해년도 평균이 -0.509 로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합병당해년도에 평균이 0.406 만큼 감소하였고, 또한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에는 평균이 0.211 만큼 증가하였다.

2. 가설 검증 결과

가. <가설 1>의 검증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합병직전년도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이 더 크지만, t-값 -0.76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합병차기년도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이 작게 나타났으며, t-값 2.149 로 $p < 0.05$ 에서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실질적인 조세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 <가설 1>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세무조정액 (BTD)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합병직전년도	-0.1982	0.2284	-0.1120	0.7944	-0.765
합병차기년도	-0.0717	0.5051	-0.4804	0.8741	2.149^{**}

주) * $p < 0.01$, ** $p < 0.05$, *** $p < 0.1$

다음으로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합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 모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합병직전년도와 합

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p < 0.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직전년도의 세무조정액(BTD)보다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5〉 〈가설 1〉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t-값
Pair1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0.0098	0.4645	0.162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0.5901	2.5899	1.116
Pair2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0.1266	0.4354	-2.232**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0.3684	1.5255	1.183

주1) * $p < 0.01$, ** $p < 0.05$, *** $p < 0.1$

주2) Pair 1은 합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 Pair 2는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

다음으로 연구대상기간인 합병직전년도, 합병당해년도, 합병차기년도에 대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세무조정액(BTD)은 합병직전년도 -0.1982보다 합병당해년도 -0.2080으로 감소하였다가 합병차기년도 -0.0717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도 합병직전년도 -0.1120보다 합병당해년도 -0.7022로 감소하였으며, 합병차기년도 -0.4804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병직전년도, 합병당해년도, 합병차기년도의 차이가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설 1〉의 분산분석 검증결과

세무조정액 (BTD)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F-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합병직전년도	-0.1982	0.2284	-0.1120	0.7944	0.586
합병당해년도	-0.2080	0.5095	-0.7022	2.0198	3.098*
합병차기년도	-0.0717	0.5051	-0.4804	0.8741	7.131***

주) * $p < 0.01$, ** $p < 0.05$, *** $p < 0.1$

나. <가설 2> 검증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미보유기업의 합병 전·후 조세효과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전년대비 증가율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가설 2>의 독립표본 t-검증 결과

panel A : 전체 기업					
세무조정액 (BTD)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증가율1(%)	-19.89	583.76	-102.64	490.06	0.698
증가율2(%)	-47.49	146.78	-39.15	463.24	-0.113
panel B :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세무조정액 (BTD)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증가율1(%)	66.05	425.67	-23.85	206.95	1.057
증가율2(%)	-75.53	152.87	-39.54	316.63	-0.540
panel C :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세무조정액 (BTD)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증가율1(%)	-230.84	849.04	-312.75	867.11	0.229
증가율2(%)	21.33	107.82	-38.11	745.87	0.261

주1) * $p < 0.01$, ** $p < 0.05$, *** $p < 0.1$

주2) 증가율1 :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

증가율2 :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panel A의 전체기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과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과 이월결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 평균이 -19.89%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47.49%로 세무조정액(BTD)이 27.6%감소하였으나,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 평균이 -102.64%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평균이 -39.15%로 세무조정액(BTD)이 66.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과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과 이월결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66.05%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75.68%로 세무조정액(BTD)이 141.73%감소하였으나,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23.85%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39.54%로 세무조정액(BTD)이 15.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C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과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과 이월결손금을 미보유한 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세무조정액(BTD)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230.84%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21.33%로 세무조정액(BTD)이 252.17% 증가하였으나,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312.75%에서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의 평균이 -38.11%로 세무조정액(BTD)이 274.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합병직전년도와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panel A의 전체기업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anel B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 모두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가설 2>의 대응표본 t-검증 결과

panel A : 전체 기업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air1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27.60	612.38	0.278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63.49	637.79	-0.660
Pair2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99.85	84.59	1.180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235.48	113193	-1.380

주1) * $p < 0.01$, ** $p < 0.05$, *** $p < 0.1$

주2) Pair 1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ir 2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nel B :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air1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141.58	456.16	1.613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15.69	340.72	0.260
Pair2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142.38	600.24	1.233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100.67	971.25	-0.586

주1) * $p < 0.01$, ** $p < 0.05$, *** $p < 0.1$

주2) Pair 1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ir 2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nel C :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값
Pair1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252.18	851.68	-0.982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274.65	1093.66	-0.870
Pair2	이월결손금 보유 기업	-4.54	228.78	-0.066
	이월결손금 미보유 기업	-594.97	1468.41	-1.404

주1) * $p < 0.01$, ** $p < 0.05$, *** $p < 0.1$

주2) Pair 1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ir 2는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증가율 비교

panel C의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 모두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당해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

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크고,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이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 증가율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제로 이루어진 합병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개정 합병과세제도 시행 전·후 조세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BTD)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과 KIS-VALUE를 이용하여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된 총 8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세제도의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합병직전년도와 합병차기년도를 독립표본 t-검정한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병완(2000, 2004) 등의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합병 전·후의 조세효과의 차이는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월결손금 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의 경우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은 감소하였고,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과 합병한 기업은 합병직전년도에서 합병당해년도의 증가율보다 합병당해년도와 합병차기년도의 세무조정액(BTD)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의 조세효과가 이월결손금 미보유기업의 조세효과를 합병과세제도 전·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보다 개정 후의 세무조정액(BTD)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다음과 같은 한계점과 그리고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합병과세제도 전과 후의 합병기업의 조세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7월 개정 법인세법 시행을 기준으로 합병과세개정 전은 2007년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합병한 기업, 합병과세개정 후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합병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합병과세제도 개정 시행부터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분석에 이용한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기업의 수가 작다. 향후 연구에서는 합병과세제도 개정 후의 표본기업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이월결손금 보유기업을 피합병기업의 이월결손금 보유, 합병기업의 이월결손금 보유, 합병·피합병 기업 모두 이월결손금 보유를 모두 묶어서 처리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표본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각각을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합병과세제도 개정으로 인한 조세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세효과의 대응변수를 회계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인 세무조정액(BTD)만을 이용하였으나 다양한 조세효과의 대응변수를 이용한다면 합병과세제도 개정 전·후의 조세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수 · 이진규. 2006. “기업인수 · 합병(M&A)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1호 : 105-135.
- 신현걸 · 정재연. 2005.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14(특별호) : 105-128.
- 염규옥. 2007.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유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명준. 2007. “기업합병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병렬. 2013. “합병과세제도가 합병기업의 조세효과에 미치는 영향”,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지선 · 최천규 · 권오현. 2011.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3호 : 203-238.
- 채병완. 2000. “기업합병의 조세효과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순성. 2003. “우리나라 기업합병의 세금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uerbach, A. J., 1983. “Corporate taxation in the U.S”, *Booking Paper on Economic Activity*.
 _____ and D. Reishus, 1986. ‘Taxes and merger decision : An empirical analysi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_____ , 1988a. ‘The Impact of taxation o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 A. J. Auerbach ed., *Mergers and acquisi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 1988b, ‘The effects of taxation on mergers and acquisitions, in : A.J. Auerbach ed., *Corporate takeovers : Causes and consequenc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sai, M. A. and D. Daharmapala, 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 Incentiv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1), pp.145-179.
- Gilson, R. J., M. S. Scholes and M. A Wolfson, 1988. “Taxation and the dynamics of Corporate control The uncertain case for tax motivated acquisitions, in : J. O. Coffee. Jr., Lowenstein and S. r ; Ackerman, eds. *Knight, Raiders, and Targets : The impact of the hostile takeover*, Oxford University Press.
- Manzon, G., 1994. “The Role of Debt in Early Debt Retirement”,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6, 87-100.
 _____ and G. Plesko, 2002, “The relat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measures of income”, *Tax Law Review*, 55(2).
- Smirlock, M., R. Beatty, and S. Maid, 1986. ‘Tax and Merger : A survey, Monograph 1985-3’, NewYor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Tax Effects of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on Merged Company

Lee, Byeong Ryeol* · Hong, Jung Hwa** · Cha, Jin 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mpirically to analyze the impacts of reformation on merger tax system, to tax effects on merged companies. To do so, we have positively analyzed ; a) the differences of the tax effects on merged enterprises before/after the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b) the differences of the tax effects between the firms with/without deficit carried forward, before/after the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The study, first, the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merger before/after the tax effect is discussed whether the differences result, the taxation system for corporate merger before/after tax adjustments (BTD) I've shown the difference, it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ectively.

Second, when one—way ANOVA was conducted, for the differences in tax effects on merger tax system, in 5 year time line from 2 years prior to the merger to 2 years after the merger, the BTD for the ones merged with the companies with deficit carried forward were higher than the ones merged with the companies without deficit carried forward.

Third, when effectiveness of the tax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tax reform, for the merging firms with/without deficit carried forward, there were differences in ETR1 and BTD patterns ; which confirm the differences in the merger tax systems before/after the reform.

〈Key words〉 Reformation of merger tax system, Merged company, Tax effect

* CTA/Vice Chairman, ShinSeung Accounting Firm, First author

**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oncurrent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operation author